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3. 제안 이유

-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포함)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,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여, 실업의 고통을 분담코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,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
- 위 신설 조항은 199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
5. 검토 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,

IMF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한 간접실업 대책으로서 실업우대증 소지자와 그 직계 가족에게 충청북도에서 조성하여 관리하는 자연

휴양림 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,

개정 내용은 제7조 입장료면제 조항에 10항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포함)를 신설하고 제7조의 2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에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포함)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 5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며, 부칙에 위 신설 조항을 199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라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

실업자의 고통을 국민 모두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6. 칙 부

◎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1부 “끝”